

# 참고자료 1. 2011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지침

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한 사업 및 설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2011년도부터 자금지원대상 사업 및 설비, 자금추천 대상 선정방법(평가방식 도입)등 주요내용이 변경 되었습니다.

에너지절약시설투자 계획 수립 및 자금신청시 차질이 없도록 첨부의 관련지침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《신청기간》

### ◎ 절약시설설치사업

- 1차 : 3월 · 7일(월) ~ 3월 11일(금)
- 2차 : 4월 18일(월) ~ 4월 22일(금)
- 3차 : 7월 5일(화) ~ 7월 8일(금)

### ◎ ESCO투자사업 : 3월 7일(월)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단위로 접수

※ 상기 신청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

※ 자금신청은 공단 근무일(토/일요일, 공휴일 신청 불가) 및 근무시간(09:00~18:00까지)기준임

## 《지원절차》

### ◎ (1단계) 자금신청/접수 → (2단계) 심사·평가 → (3단계) 자금추천대상 선정 → (4단계) 추천통보

## 《신청방법》

### ◎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(인터넷) 접수

- 공단홈페이지 → ‘전자민원’(상단 메뉴) → ‘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’

※ 2011년도 자금지원지침이 대폭 개정 되었습니다.

지원대상사업/설비, 신청자격등 지침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자금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도입에 따라 평가접수가 낮을 경우 자금지원 대상설비라고 하더라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[ESCO투자사업] 관련 문의는 031-260-4367~8

[절약시설설치사업] 관련 문의는 031-260-4362~5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자금지원 조건 및 자금지원 대상자

### 가. 자금지원범위

- 1)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% 이내로 한다. 다만,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, ESCO 투자사업은 소요자금의 100% 이내로 한다.
- 2) ESCO펀드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국내외 ESCO투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출이자율, 지원한도, 금융기관 대출수수료 이외에는 동 지침의 ESCO투자사업의 자금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. 다만, 공단은 대출이자율, 지원한도, 대출수수료, 세부 지원기준 등에 관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공지한다.
- 3) 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·개수공사비, 설계·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. 다만, 부가가치세,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.

## 나. 자금지원조건

사업명	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이자율	비고 (억원)
ESCO투자사업	500억원 이내 (동일투자사업장당 250억원이내)	3년거치 7년 분할상환		3,900
절약시설 설치사업	온실가스 · 에너지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	50억원 이내	『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』에 따름	1,096
	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			1,022
	-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	10억원 이내		
	- 수요관리투자사업	5억원 이내		
합 계				6,018

주1) 위 표의 대출기간이 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「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영요령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주2) 비고란은 지원규모이며,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.

주3) 전년도에 자금추천을 받은 계속사업 중에서 당해연도 소요자금이 위 표의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약시설설치사업의 지원한도액은 1.5배를 적용한다.

## 다. 자금지원대상자

사업명	자금지원대상자
I. ESCO투자사업	◦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 또는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 및 ESCO와 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
II. 온실가스 ·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	◦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· 에너지 감축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 (다만, 2012년까지 목표 관리제 대상기업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도 가능) – 단, 그린크레딧(Green Credit)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이 자금신청하는 경우 포함
III.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	◦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산업체 등 절약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로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· 에너지 감축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아닌 자
IV.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	◦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(중소기업에 한함)
V. 수요관리투자사업	◦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시설을 신 · 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(ESCO투자사업 이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함)

## 라. 자금지원대상사업

사업명	대상사업
I. ESCO투자사업	◦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 I 항에 해당하는 시설
II. 온실가스 ·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	◦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관리업체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의 개체사업 – 단,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–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 · 증설 사업도 포함
III.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	◦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 III항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개체에 해당되는 사업 – 단,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–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 · 증설 사업도 포함
IV. 고효율제품 등 생산 시설설치사업	◦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 IV항에 해당하는 시설
V. 수요관리투자사업	◦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 V항에 해당하는 시설